

주간지와 인격권 침해

오 소 백 한국광보연구소 소장

주간지에 의한 예능인 · 프로 체육인 · 기타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까지도 지나친 주간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부로 느끼는 정도다…… 연예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일반 대중이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를 알고 싶어하는 것 만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연예인에 대해서 문제인 것은 이성과 스캔들을 일으키는 게 프라이버시의 포기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경우엔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이다.

I. 머릿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주간지는 한말로 「요지경」이다. 그래서 주간지는 센세이셔널리즘을 날마다 창조한다. 창조가 어려우면 열치기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주간지는 인기인을 쫓는다. 평판을 쫓는다. 나체와 섹스를 쫓는다. 그로데스크한 것을 쫓는다. 패션을 쫓는다. 프로·스포츠를 쫓는다. 스크린을 쫓는다. 복권 · 마권 · 주권을 쫓는다. 주간지는 「문도가네」 식인 것을 즐겨 한다. 흥미·재미있는 것이라면 아슬아슬한 곳까지 스며든다. 흥미 재미있는 것이라면, 가치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흥미를 위한 흥미」, 「재미를 위한 재미」로 끝나도 무방한 게 주간지다. 흥미 · 재미 앞에는 공익이나 진실의 레텔썸은 뒤로 물러 나도 무방하다. 「옷을 벗길 수록 잘 팔린다」 주간지의 나체(표지 · 화보)정도에 따라 판매부수가 어림된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지난 해 사기사건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어느 「큰손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한 잡지는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신문에 실었다.

「XX의 여인은 그것도 큰가?」 광고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찔했다. 「이렇게 광고해도 괜찮은가?」 사건을 미워하는 시민들도 이러한 잡지광고에는 증오의 눈길을 보냈다. 아마도 많은 주간지들은 이런 대담한(?) 광고에 아차 했을지도 모른다.

「한 교량(다리)의 파괴는 건설보다 훨씬 더 큰 흥미를 돋군다. 」

프린트의 이 말은 주간지의 흥미·재미 위주의 속살을 잘 말해준 듯하다. 「외설 또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공속양속을 해쳐서는 안된다」 이렇게 밝힌 잡지윤리요강 제 1 조의 내용은 매우 시니컬하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 조항을 비롯해서 사실에 있어서는 저속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II. 한·일의 주간지 비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간지 「잡지」는 10 종 가깝다. 본격적인 주간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주간 한국」이 처음이었다. 1964년 9월 27일에 창간한 「주간한국」은 주간지로서는 독무대를 이루고 있었다. 「주간한국」은 40만부까지 발행하게 되었다. 얼마 뒤 여러 신문들이 주간지를 다투어 내기 시작했다. 주간조선, 주간중앙, 주간한국, 주간경향, 선데이 서울, 주간여성, 스포츠동아, 주간스포츠 등 이러한 주간지(지)들은 큰 신문사가 겸영하고 있다. 「주간조선」만 제외하고는 모든 주간지가 대중 오락지다. 주간지를 큰 신문이 겸영하고 있다는 데서 보다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간지는 30만부대를 육박하는 것도 있었다. 현재의 주간지들은 몇 해 동안 부수가 떨어지는 형편에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간지들은 10만부 안팎에서 맴돈다는 것이다. 넉넉잡고 한 주간지가 10만부씩 발행한다 쳐도 총 1백만 부 정도가 된다. 신문이나 주간지나 모두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부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일본 출판연감(1976년 판)에 따르면, 1975년 말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일본의 잡지는 2,750종, 주간지의 발행부수는 11억 2,895부이다. 국민 1인당 평균 약 10부 꼴로 주간지를 구독하는 셈이 된다. 일본은 동양에서 제일가는 주간지 왕국이다. 주요한 주간지의 발행부수를 옮겨보자.

☆ 95만부 이하 주간 동양경제, 주간 다이어몬드, 조일저널.

☆ 20만부 합 주간대중.

☆ 30 만부 합 주간산경, 선데이매일 , 영 레이디, 만화액션, 아사히 예능.

☆ 50 만부 합 주간신조, 주간현대, 주간평범, 여성세븐, 미소 .

☆ 60 만부 합 주간토스트, 플레이보이, 평범펀치, 여성자신, 빅·코믹

☆ 70 만부 합 주간명성.

신문사에서 경영하는 주간지는 어느 것이나 30 만부대에서 40 만부대이다. 잡지사계의 주간지는 거의 50 만부대에서 60 만부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사계의 주간지가 잡지사계의 주간지에 많이 뒤지고 있다. 이밖에도 주간 만화지의 발행도 대단하다. 소년 만화지 중에는 공칭 1 백 50 만부 발행의 것도 있다. 이러한 발행부수는 주먹구구나 어렵지 않다. 모두 ABC 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11 억의 부수를 내는 일본의 주간지, 싫건 좋건이건 에누리할 수 없는 커다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그것이다. 대양 · 대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정보 · 정치정보 등의 딱딱한 주간지는 가장 낮은 발행부수를, 반대로 연예정보 전문지가 일본최대의 발행부수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주간지의 경우도 매일반이다.

III. 「불확실 욕망」을 부채질

주간지는 오늘 날의 커뮤니케이션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주간지의 기능을 말하고 있다.

① 주간지는 「불확실욕망」을 부풀게 한다. 「……싶다. 」, 「X X 싶다」, 「● ●싶군」 따위의 「뜨내기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주간지의 목차를 훑어본다.

「승진/섹스/스포츠/재산과 지위 / 사업의 성공 / 레저 / 주 / 건강 / 암 / 운수 / 투기(돈벌이) / 심령실험 / 패션 / 미용 / 결혼 / 연애 / 이혼 / 정부 / 오너드라이버 / 꽃꽂이 」 많은 남성을 상대로 한 주간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정치 0%, 스포츠 8.5%, 경제 6%, 패션 9%, 기업정보 3.3%, 학생생활 1.7%, 섹스 · 여성 12.5%, 자동차 6.0%, 투기 벌이 7.3%, 음악 · 쇼 0.8%, 영화 · 연극 · TV 7.0%, 해외뉴스 4.7%, 경영뉴스 1%, 소설 · 만화 11.5%, 광고 30%, 기타 5.8%, 이를 간추리면 섹스, 패션, 스크린, 돈벌이 넷으로 볼 수 있다. ② 주간지는 신기한 이벤트를 만들어 낸다.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3 일이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인금연다는 정말 효력이 있나?」, 「남아를 마음대로 출산할 수 있는 비법」 등의 기사가 그것이다. 이런 타입의 기사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또 하나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게 섹스를 믹스한 토픽이다. 주간지를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는 점이다. 온천장 · 사우나탕 등 이른 바 플레이 스팟 관계의 기사가 거의 그런 것이다. ③ 주간지는 「옛보는 취미」의 매체구실을 해준다. 가령 어떤 대사가 사건으로 거물급(배경있는) 인사가 체포되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주간지는 「거물인사의 유치장 입소광경을 비롯, 거물급인사도, 치한도, 살인범도 모두 평등, 누구건 문초와 유치장 살이 속에서 차츰 마음에 가라앉게 되어 진실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거물급인사의 경우도, 꼭 그렇기를 기대하자.」 - 이런 식으로 기사를 끌고 간다. 이건 주간지가 개발한 독특한 것인지도 모른다. ④ 주간지는 욕구불만의 의사해결 기능을 한다. 이를테면 주간지는 불만을 소통시켜서 하나의 에네르기로 정리하기 보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에 가까운 대리만족의 정신상황을 만들어내는 기능 - 그 쪽이 훨씬 크지 않을까 한다. 이 대리만족 또는 의사해소가 끝까지 「대리」 또는 「의사」 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사실은 우리들 독자에도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주간신문 · 주간지들은 나름대로 자율적인 규제를 위해 윤리요강을 지니고 있다. 윤리요강의 골자를 훑어보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잡지윤리실천요강 중 몇 항목만 옮겨 본다.

1. 잡지는 민족고유의 문화를 보호 육성하며 외설 또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2. 잡지는 자살을 찬미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퇴폐적이고 선정적 또는 경악스러운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된다.
3. 잡지는 점술을 비롯하여, 점성, 환상, 골상, 수상술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믿도록 조장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된다.....
4. 잡지는 저급한 선전으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잡지인의 긍지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줄임)

주간신문 윤리실천요강 중 몇 조목만 들어본다.

2. 신문의 책임

신문의 자유가 사회적인 보장을 받는 이상 신문은 사회의 공기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 고려됨이 없이 이기적 목적때문에 자기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질서 및 도덕을 해치거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5. 타인의 명예와 자유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찰 또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시켜야 한다. (줄임)

6. 신문의 품격

주간 신문들은 그가 갖는 공공성 및 지도성 때문에 높은 품격이 요구된다. 이에 신문인들은 도의적 결함을 공고히 하여 일체의 저급한 행동을 피하여야하며 항상 품격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문인에 대하여서는 그 품격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제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IV. 중재위와 잡류이 다룬 사건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 집계에 따르면 81 년 1 년간 주간지 심의결정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미풍양속저해 20 건
- ▽ 품위 상실 9 건
- ▽ 폭력·범죄행위사실적 5 건

▽ 광고 불건전 50 건

▽ 광고 불표시 13 건

결정 이유 총 97 건 중 순위로 보면 광고불건전, 미풍양속 20 건, 광고 불표시 13 건이다. 광고료를 내고 싣는 불건전 광고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미 이런 「불건전광고」는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언론중재위원회는 81 년 7 월에서 82 년 연말까지 주간지(대중)와 관련된 중재 11 건을 다루었다. 중재신청을 받은 11 건 중 5 건은 중재에 의한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5 건은 중재 불성립, 1 건은 취하로 끝났다. 중재위에 신청된 11 건의 사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수의 사생활 침해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 탤런트 명예훼손

▽ 허위 보도

▽ 공무원 명예훼손

▽ 명예훼손

▽ 탤런트 명예훼손

▽ 인기인 명예훼손

▽ 외국인 명예훼손 (이하 줄임)

중재위에 신청된 사건의 거의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 중재위에 접수된 한 사

건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

중재신청취지

정정보도문

1. 「야구 삼미 슈퍼스타즈 팀 투수 임호균은 방미에 구혼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상면하거나 서로 얘기도 나눈 사실이 없는데 1983·1·16·발행 주간경향(18 면)에 임호균과 방미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호흡이 맞는 상대임을 확인하였다는 오보를 하였다」 고 정정보도를 하고,
2. 「경향신문사는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금 5 천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언론중재를 바랍니다.

중재신청이유

1. 신청인은 일본국에 약혼녀가 있고, 야구 삼미 슈퍼스타즈 팀 투수로 활약 중에 있는 바, 전혀 만나보거나 구혼 얘기 등을 한 바 없는데 경향신문사는 주간경향지(통권 726 호)를 1983·1·16·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지 19 면에 신청인이 가수방미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호흡이 맞는 상대인 양 마치 신청인이 구혼을 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오보를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뜻하지 아니한 파란을 던져, 개인적 신상문제는 물론 가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선수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 또한 큰 것이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 보도의 본문

두 번째로 방미와 대좌한 사람은 최근프로야구 삼미 팀에 특급 대우로 입단한 미남투수 임호균씨(26) 후배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상당히 호흡이 맞는 상대임을 확인했다는 것. 방미는 남달리 성격이 화끈하고 명랑한 반면 임씨는 운동선수답게 과묵하고 침착해서 묘한 양극의 조화를 느꼈다고 그녀는 실토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으며 조심스러운 자세. 임씨가 8 월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가 시간이 전혀 나지 않는 데다가 자신도 각종 공연으로 거의 시간을 낼 수 없어 당분간은 특별한 진전을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안타까와 했다.

이 사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간다. 이 사건은 기사의 출처가 문제일 텐데, 기자가 전혀 거짓을 꾸밀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방미의 입을 통해 기사를 꾸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방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핵심이 된다. 가령, 방미의 거짓말을 그대로 기자가 믿고 기사를 썼다면 전적으로 거짓기사가 될 가능성이 짙어질 것이다. 이를테면 기자가 연극에 말려들어 보기 좋게 허위 기사를 써낸 셈이 된다.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가 주간지에 대한 심의결정(81년도)한 사건을 10 케이스만 들어본다.

<케이스 1> (선정적)

위 만화는 상해 임시정부의 첩보원이었던 김정균의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첩보활동 상황을 소개한 내용으로서

(1) 제 84 면 및 제 85 면에, 벌거숭이의 두 남녀가 어울려 정사를 벌이는 장면을 선정적이며 사실적으로 저속하게 묘사하여 게재하다.

<케이스 2> (선정적)

위 잡지는 연예계 (영화)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1) 『촬영중인 유혹 등 19 편 한결같이 제목경쟁만』이란 부제 하에 「영화(날마다 허물벗는 꽃땀)에서 이은하와 김성환」 운운과 함께 알몸인 남녀가 풀숲에서 남성상위의 체위로 남자가 여인을 덮쳐 누르고 있는 선정적인 표현의 사진을 게재하다.

<케이스 3> (선정적)

위 잡지는 방화계의 근황을 소개하면서(1) 「최근 방화계는 지나친 흥미만을 의식, 농도 짙은 성인용 영화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다」 운운한 설명과 함께 완전 나체의 남녀가 뒤엉켜 애무하고 있는 선정적인 표현의 사진을 게재하다.

<케이스 4> (선정적)

위 잡지는 현재 인기 상승세에 있는 외국의 영화배우를 소개 하면서

(1) 살색의 브래이저와 팬티를 입은 여인이 양쪽다리를 세운 무릎 위에 양 팔꿈치를 펴고 비스듬히 앉아 있어 완전 나체인 여인의 국소 부분이 노출된 듯이 표현된 선정적인 표현의 원색사진을 게재하다.

<케이스 5> (선정적)

위 만화는 이조 명종대의 큰 도둑이었던 임꺽정을 소재로 한 내용 중 오연석의 염색에 얹힌 이야기로서

(1) 67 면-68 면 : 「애무당은 이후로도 연일새벽 그 샘터로 찾아왔다. 그리고는 온갖 교태로 그를 유혹했으니, 월여 만에 마침내 그는 무녀의 능란한 미술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헉헉」 「호호」 「네.. 네년이 내 애를 말려 죽일 작정이냐?」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붓물처럼 터져 나온 젊은 수도승의 욕정 아무리 아미타불을 염해도 그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게 제석탱화를 그려달라니까요. 그림만 그려주면 인신공양이야 어렵히 바치려고……」 「이 요사한 것!」 결국 그는 자신의 음욕에 졌다. 무녀를 한번 품어볼 요량으로 제석도…… 초화와 조색한 것 각각 한 벌씩을 남몰래 그려주고 말았던 것이다. (하락)」 운운한 대사와 함께 종이 무녀를 범하게 되는 내용을 선정적이며 저속하게 표시하여 게재하다.

(2) 71 면 : 「아비는 그 길로 제죄의 씨를 안고 절집에서 떠나왔는 바, 그때 그 무녀가 남아 팽개친 아이가 바로 동승이 된 지금의 연석이다. 「이 죄업은, 이 억압은 끊어야 한다.」 아비는 공방으로 들어가 등피를 다리기 위해 화로에 꽃아 둔 인두를 들고 나왔다.」 (하락) 운운한 대사와 함께 아비가 어린 자식을 인두로 지지는 처절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게재하다.

<케이스 6> (광고불표시)

위 기사는 활법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치료해 주고 있는 김현철 관장을 찾아, 취재 소개한 것으로서

(1) 디스크는 난치병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김현철 관장은 현재 사단법인 불무도 활법 공인 7단의 막강한 실력자다. 그는 무술활법(살리는 비법)을 통달하기 위하여 18년 동안 입산 수도 끝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또한 활법 중에서도 특히 의사법과 신전법, 보사법으로서 세인을 깜짝 놀라게 한다.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디스크 환자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김관장의 활법을 보고 놀라움과 격찬을 아끼지 않는다.(중략) 김관장은 2월에 일본에 건너가 특수한 활법으로 국위를 선양할 계획이며 현재도 대기업을 비롯한 군 부대 등 활법 강의에 여념이 없고 온 국민에게 활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있다.(하략)

(2) 「상담은 무료. 중구 충무로 5가 8의 5 삼일빌딩 301호 전화 260-0152. 사단법인 대한불무도협회 무술활법 현철도장……」 운운과 함께 도장의 위치약도와 김현철 관장의 사진을 게재하다.

<케이스 7> (선정적)

위 잡지는 방화 「속 영자의 전성시대」를 소개하면서

(1) 완전 나체의 남녀가 뒤엉켜 하체를 이불 속에 파묻고 남자가 여인을 덮쳐 누른 채 유방을 빨면서 한 손으로는 유방을 주무르고 있어 여인의 걱정을 참지 못해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선정적인 표현의 사진을 게재하다.

<케이스 8> (선정적)

위 기사는 미국의 「린더·윌프」가 10만 6천명의 여성으로부터 고백을 듣고 분석한 「성보고서」를 전제한 것으로서

(1) 5월 9일자 제 34-36면 「10대 소년 성보고서」제하에 (전략) ▽ 최초의 섹스를 했을 때 당신은 몇 살이었는가? 이 물음에 「10~15살이라 대답하는 여성이 전체의 64.3%였고, 17살까지에는 97.3%가 경험했다고 대답했다」(중략) ▽ 최초의 데이트에서 섹스를

가졌는가? (고백 1) 나와 섹스를 가졌던 남성 중 약 반 가량은 만난 그날 밤 섹스를 했다. 침대로 가기 까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 관계도 깊어지리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남성들은 항상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내가 노하고 대답하면 그 순간 그들은 나에게 대한 흥미를 갖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케이스 9> (과장광고)

위 광고들은 기술학원과 헬스클럽, 바, 의약품 등을 선전하는 것으로서 본문 중에

(1) 「100% 취업보장」, 「100% 살정작용」, 「100%교정확신」, 「효과 100%보장」, 「100%완전한 교정」, 운운 게재하다.

<케이스 10> (불건전광고)

위 광고는 「구천 역리원」의 역술가 「구천」 씨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본문 중에

(1) (전학) 「조석으로 변동하는 인생의 운명! 과연 귀하의 운명은 어떠한지 과거, 편재, 미래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도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운명의 노선을 바로 찾으시라. 미신을 타파하고 정통학술의 원리를 들으시라」 (중략) 「임신 중 남·녀의 구별 100%맞춤」 나는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아기만 낳으면 왜 여자아이만 낳는지? 너무나 정확한 상만 보든지 생년월일대면 옷대 산소에 물이 들었는지, 개미집이 있는지, 나무뿌리가 들어 갔는지. 앞에 축이 무너졌는지, 산소에 무슨 구멍이 있는지, 산소터가 명당자리인지 아니면 산소터가 나쁜지 정확하게 알아」 (하략) 운운 게재하다.

V. 문제 많아질 인격권 침해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의 값이 있다」고 오버트 월포울가 말했듯이 남을 밟지 말아야 한다. 남한테 밟히지도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값이 있다. 인격권이라 해도 무방하다. 인격권이란 말은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이를테면 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해 「인유리아」 소권과 「아퀼리아」 소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구체화했다. 후세에 이르러 자연법 사상 속에서 이 권리는 키워졌다. 이런 천부의 권리에서부터 비롯된 인격권은 - 「모든 법률의 출발점이며, 모든 권리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 권리의 주체는 인격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인격권의 보호는 자기 자신일 경우, 권리의 주체와 객체는 동일하며, 이들 인격은 특히 법률상 또는 법률 외의 인격적 행위에서부터 나타난다.」 E. 콜러의 이 말은, 인격권은 법인체에도 있다는 것이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명예·씨명·초상·정조·신용 따위에 인정되는 인격적 이익의 전부를 말한다. 이 권리는 포괄적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주장된다. 인격권을 법에 어긋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결국 개인의 법익과 이익에 대한 확보·보호는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존재를 법이 지켜주는 걸 의미한다. 인격의 보호는 사회전체를 위하여,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권도 사증화하여 보호를 받는 하나의 법익에 속한다는 건 마땅한 일이다.

VI.. 「유명인」 과 프라이버시의 한계

주간지에 의한 예능인·프로 체육인·기타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지나친 주간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부로 느끼는 정도다. 「유명인」은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존재로 보는 흐름이 짙다. 또 「유명인」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제한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단순도식적인 이론은 불문률의 것으로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 같다.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들은 관심이 많다. 주간지 편집자들도 이러한 독자의 구미에 발맞추기 위해 「유명인」의 사생활을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다. 이 경우, 편집자들은 불문률의 보도 「프라이버시의 포기」를 내세워 자위하려는 것 같다. 적지않은 연예인들은 프라이버시가 폭로됨으로써 보다 유명해지는 기회를 악용하는 흐름도 있다. 몇 해전, 밤의 해수욕장에서 한 여가수의 허벅다리 자상사건이 있었다. 신문은 물론, 뒤이어 주간지들이 앞 다투어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여가수는 일약 화제의 정상에 올랐다. 얼마 뒤, 이 사건은 여가수의 자해 행위임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전술을 위해 매스 미디어를 의식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케이스다. 한 말로 신문·주간지는 일개 연예인의 인기조작 연극에 보기 좋게 말려든 셈이다. 이런 경우, 독자대중(이런 기사를 즐기는)은, 그게 가짜건 연극이건 그다지 신경과민이 되지않는다. 가짜(자해행위)일 망정 그것조차 「재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근들 독자대중은 「진실」, 그것보다도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과연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포기 이론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일까? 「유명인」이라는 말은 법률상으로는 명백치 않은 개념이다. 성문법상 「유명인」을 긍정한 것이 하나 있다. 이를테면, 독일

미술저작권법 제 23 조가 그것이다. 그 조항에는 「현대사의 영역의 인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명인」이다. 그들 「유명인」에 대해서는 무단촬영이 허용되어 있다.

「현대사의 영역의 인물」은 정치가 · 실업계의지도자 · 예술가(연예인) · 과학자 · 프로 체육인 따위다. 이 밖에 부도덕 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해서 공중의 평판에 오른 사람도 나쁜 「유명인」에 낀다. 이들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프라이버시의 테두리가 제한돼 있다고 쳐도. 그 제한은 「유명인」의 종류에 따라 같지는 않다. 이를테면, 정치가와 범죄피의자를 같이 다룰 수는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결국 유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연예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연예인이기 문에 프라이버시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일반대중이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명시 또는 묵시의 프라이버시 포기가 있을 경우는 다르다.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없다. 하지만, 명시나 묵시가 있을 경우라도 그 범위가 문제로 된다. 더구나 묵시의 포기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늘 인정이 곤란하다. 연예인에 대해서 문제인 것은, 이성과 스캔들을 일으키는 게 프라이버시의 포기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경우엔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였을 때는 어떨까. 그 스캔들이 범죄성을 띄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났을 경우는, 프라이버시의 포기로 보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공공이해에 관한 행위가 된다. 이런 경우, 다만 어느 정도의 스캔들이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것이냐 따진다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연예인에 의한 소송이 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연예인에 의한 소송이 겨우 싹 트는 단계에 있다.

VII. 멜빈사건의 판례와 프라이버시

과거에 「유명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보통인이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 내는게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더듬어 보자. 미국의 한 유명한 판례가 있다. 사이디스 사건(1940)으로 불리워지는데, 사이디스는 어릴적부터 신동으로 알려졌다. 16 세에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다. 매스컴은 신동 사이디스를 크게 추켜댔다. 그러나 그 뒤, 사이디스의 재능은 그쳤다. 그는 보통 은행원으로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지 뉴욕지가 「그는 지금 어디에」라는 연재기사 속에 사이디스에 관해서 전기식의 단편과 만화를 실었다. 기사내용은 호의적이었고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사이디스는 숨겨 두고 싶은 과거의 비밀을 폭로 시켰다고 법에 호소했다. 법원은 사이디스가 과거에 있어서 공적 존재(유명인)였던 걸 이유로 청구를 물리쳤다. 법원은 그 이유 중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슬퍼해야 할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웃 사람이나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의 불행이나 단점같은 것은 딴사람에게는 적지않은 흥미와 화제의 거리가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사회의 습관이라면, 신문·서적·잡지 등에 그런 걸 금지하는 법원은 현명한 건 아닌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잡지편집자에 대해 유리한 의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와는 대립되는 판례도 있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멜빈 사건(1931)이 그것이다. 멜빈은 이전에 매춘부였다. 그녀는 살인피해자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된 일이 있다. 그 뒤 새출발해서 결혼했다. 그러는 정숙하고 모범적인 주부로서의 생활을 보냈다. 그녀는 사교계에서도 상당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피고는 멜빈의 양해도, 동의도 없이 「빨간 의상」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개봉했다. 이 영화는 멜빈의 과거생활의 실화에 바탕한 것으로 더구나 결혼전의 본명을 썼다. 이 때문에, 멜빈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가 알려져 조소받고 버림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 5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다. 판결이유 중엔 이런 글이 있다.

「멜빈이 갱생한 뒤에 그 과거의 생활에 있어서의 불쾌한 일들을 공표한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도덕 및 윤리의 어떠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화할 수 없다.」 부인의 성명과 명예에 대하여는 신중치 않으면 안된다. 만약 불행한 여성의 기사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자가 그의 연결에 대해서 범한 죄 이외에는 하등의 범죄를 짓지 않은 한, 그에게는 적어도 딱하다 할만한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상처는 아물게 된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여자의 평판만은 그렇지 않다. 상대가 남자일 경우라도 그의 명예에 관한 기사일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공평한 태도를 지켜 절도를 잃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명예가 좌우될 경우에는 특히 이런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서도 일이 된다면 직접 그것을 쓰거나 혹은 농담 겸 또는 부주의한 불장난 겸으로 여성의 명예에 대해 의문부를 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런 일은 대개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여성이 사소한 과실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용적 태도를 취하기로 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생애에 있어서의 위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일이 신문 잡지 등에 실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여자를 자포자기에 몰아넣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친절하게 다루어 주면 그도 또한 희망을 되찾을 것이다. 어떠한 기사에 있어서도 한 여성의 생애를 망쳐도 좋으니 만치 가치있는 기사는 드물 것이다. 이는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동일하다. 어휘에 있어서도 사고에 있어서도 신문은 정갈해야 한다. 야비한 어휘나 시사적인 표현은 불필요하다. 김현옥씨는 불도저 서울시장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그는 공으로도 유명했고, 과로도 유명했던 양면성을 지녔다. (과거 시장 때의 일)관계를 떠나 10여년 동안 잠잠하던 김씨가 느닷없이 매스컴에 등장되었다. 그는 어느 지방 중 고교 교장으로 인생을 새출발하고 있다. 과거의 「유명인」을 재조명 시킨 이 기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명인」의 유명도로 본다면 현재의 교장은 과거의 시장보다 낮은 셈이다. 현재의 교장이 유명도에 있어 과거보다 낮다고 해서 그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김씨의 경우는 사실이면서도 공익에 플러스한 건설적인 화제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가 떠오른다. 과거 신문팔이를 해서 공부한 학생이 오늘날 큰

재벌회사의 이사가 되었다. 현재 「유명인」(?)이 된 사람을 등장시켜 과거 어려운 때의 생활을 되살려 대조시켰다. 이 경우, 당사자에 따라서는 과거의 신문배달생활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원치 않더라도, 신문, 잡지가 이를 다루었다면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이러한 기사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황실에는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전전은 황실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전적으로 금기사항이었다. 황실의 프라이버시를 범하면 불경죄로 벌 받았다. 패전과 함께 황실의 민주화를 위해 「금기의 철막」은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그때부터 황실에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주장이 드높아졌다. 또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황은 나라의 상징이며, 황족과 함께 특권을 지니고 있다. 그 특권에 상응해서 프라이버시가 존재치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사생활 그것으로 풀이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황실의 사생활도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황실이 프라이버시의 미명아래 프라이버시가 아닌 것까지도 제한함으로써, 전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VIII. 유명인이 먼저 프라이버시 권리지켜야

주간지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말할 문제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판례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연예인이 소송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다. 1960년 가을, 일본 법무국(동경) 인권 옹호부에서 연예·스포츠계 유명인 7백 30여 명에게 「주간지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앙케이트」를 보냈다. 이 설문에 회답한 사람은 겨우 1백 96명, 더구나 회답자의 70% 이상이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또 그들의 대부분은 잡지사에 대해 항의나 정정요구를 한 정도에 그치고, 법정에 까지 끌고 간 케이스는 겨우 몇 건 뿐이다. 절대다수는 씁쓸히 단념하고 말았다. 선진외국의 연예인들은 우리들이 보기엔 사소한 듯이 여겨지는 것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경우는, 연예인들의 생각도 앞서 있다. 우리 연예인들도 외국 연예인들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다만 연예인들이 먼저 자각해야 할 점이 있다. 연예인 스스로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이나 매일반이다.

- 서울신문 사회부장, 한국일보 사회부장 역임
- 저술: 「기자가 되려면」 「매스컴 문장강화」 등 다수
- 현재 한국 광보 연구소